

**【報告事項】**

○ 議案提出 및 審査報告

- 구민회관내직능단체입주에관한동의안
- 구민회관및구의사당위탁관리에관한동의안  
(이상 2건 '92. 11. 19 영등포구청장제출)
- 1993년도 영등포구 예산안
- 1991년도 영등포구 세입세출결산안
-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 
(이상 3건 '92. 11. 24 영등포구청장 제출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 
조례중 개정조례안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속철도 건설사업  
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
- '93년도 영등포구유재산관리  
(이상 3건 '92. 11. 17. 영등포구청장 제출,  
'92. 11. 21 행정재무위원회 회부)
- '92년도 영등포구 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  
안  
( '92. 11. 20 영등포구청장제출, '92. 11.  
21 행정재무위원회 회부)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('92. 11. 24  
김대섭의원회 6일 발의)
-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('92.  
11. 24 안주영의원회 6인발의)
- '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
(운영위원회, 행정재무위원회, 시민보사위  
원회, 도시건설위원회)  
( '92. 11. 24 각위원회안 채택 제출)
-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
- 휴회의 건(11. 6~11. 29...3일간)  
( '91. 11. 25 의장제외)

**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  
(案)**

의안	提案年月日: 1992. 11. 21.
번호	提案者: 金大燮 議員外 6 人

1. 主 文

地方自治法 第50條 第2項 및 永登浦區議會  
委員會 條例 第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 
'91年度 決算 및 豫備費支出承認의 件과  
'93年度 豫算案을 審査하기 위하여 委員  
11名으로 豫算決算別委員會를 構成한다.

2. 提案理由

地方自治法 第118條, 第125條 및 永登浦區  
議會 會議規則 第60條, 第64條에 의하여  
永登浦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는 '91年度  
決算과 '93年度 豫算案등 豫算決算에 관한  
案件을 審査하기 위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  
會를 構成